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가합588339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 등]

전 문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

담당변호사 이동희

피 고 1. C

2. D

변 론 종 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7. 16.

주 문

1. 피고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는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가상화폐의 일종인 E를 발행유통하고자 하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20. 4.

10. 피고 C에게 계약 시 3억 5,000만 원, 가상화폐거래소인 F에 E 상장 시 3억 5,000만 원 총 7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 내에 F와 E에 대한 상장계약체결 및 상장완료를 하여 주기로 하는 F 상장 에이전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정보

1. 에이전시 계약의 목표: F 상장 및 마케팅

2. 이행기한: 에이전시계약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2개월 이내 F와 최종 상장계약서작성(상장계약체결) 및

상장완료

○ 결제정보

1. 에이전시 계약서 작성 후 2020. 4. 13. 계약금 350,000,000원(USDT/BTC/원화)을 G계정 또는 지갑주소

로 전송하면 해당 시간부로 에이전시 계약이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F와 상장계약 체결완료일에 잔금 350,000,000원(USDT/BTC/원화)과 100,000,000원에 해당하는 토큰을

G 계정 또는 지갑주소로 전송하면 해당 시간부로 계약이 종료된다.

○ 계약약관

제4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이행)

① 계약의 체결-갑(원고 A, 이하 같다)이 작성한 계약서에 대한 을(피고 C, 이하 같다)의 동의 및 표시 및 계약금(350,000,000원)의 지급으로서 에이전시 계약이 체결됩니다.

② 계약의 이행-계약금이 을에게 지급됨과 동시에 계약이 이행됩니다.

1. 입금일로부터 계약이 시작되며, 을은 갑과 F 간의 상장계약체결을 위한 노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갑과 F 간의 상장계약 체결 및 상장이 완료되면, 갑은 을에게 잔금(350,000,000원)과 E 토큰(100,000,000원)을 당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6조(계약 해지 및 해제)

② 을이 에이전시 계약서상에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환불금(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7조(손해배상)

을이 제4조 제2항의 자신의 의무를 고의, 과실로 해태하여 갑과 F간의 상장계약체결이 좌절된 경우, 또

는 을이 자신의 에이전시로서의 능력을 허위로 과장하여 본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갑에게

본 에이전시계약상 계약금의 두배에 따른 금액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원고 A는 2020. 4. 14. 이 사건 계약금으로 피고 C에게 3억 5,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2개월의 기한을 도과하여서도 E를 F에 상장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20. 9. 4. 원고 A의 실경영자인 원고 B에게 ‘2020. 9. 11.까지 3억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각서에 따른 금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

라. 피고 C은 2020. 9. 18. 원고 B에게 ‘2020. 9. 23.까지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2020. 10.

23. 이내에 나머지 2억 5,000만 원의 변제 계획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채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라 한다)를 재차 작성교부하였다. 피고 C의 처인 피고 D는 위 1억 원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C은 원고 B에게 2020. 9. 23.까지 1억 원 일부 채무관계를 변제하기로 하며, 그 상환은 피고 D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실시한다. 대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 피고 C의 사무실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즉시 상환한다. 나머지 2억 5,000만 원에 대한 추후 변제 계획은 1억 원의 상환이 끝난 후 2020. 10.

23. 이내에 추가 진행하기로 한다.

* 피고 D는 위 담보대출금을 통한 상환 1억 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책임질 것을 동의한다.

2. 피고 C은 E의 F 상장을 추진함에 있어 총 3억 5,0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아서 진행하였으나, 예상기간

보다 상장계약의 체결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금을 임시로 환불함에 있어서 본 각서를 체결하므로, F 상장계약이 진행되면 해당 지불각서는 무효하며, 상환했던 금액은 다시 F상장피로 사용한다.

3. 피고 C이 원고 B에게 위 제1항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것을 변제하기로 한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6. 25. 무렵까지 E를 F에 상장하여주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 C은 원고 A가 계약금을 입금한 2020. 4. 14.부터 2개월 이내에 E를 F에 상장시켜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하였고, 약정기한인 2020. 6. 14.경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0. 14.까지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상장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 ②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상장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③ 피고 C이 E를 상장시키지 못한 데 대하여 F의 잘못 또는 불가항력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 C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 A의 '피고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약관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이 2020. 11. 2. 피고 C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은 위 계약약관 조항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계약금 상당의 3억 5,000만 원과 계약 해제에 귀책사유가 있어 이 사건 계약약관 제7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의 3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를 통하여 원고 A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손해배상 없이 계약금 3억 5,000만 원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는 피고 C이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되, '예상기간보다 상장계약의 체결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금을 임시로 환불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피고 C이 계약금 반환 약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도 모두 변제하기로 한 점, ③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는 'F 상장계약이 진행되면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는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 A의 실경영자인 원고 B가 원고 A의 대리인으로 피고들로부터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금 및 손해배상 모두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의 효력 또한 소멸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 B의 청구

원고 B는, 피고 D가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에서 정한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1억 원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들어, 피고 D에게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는 원고 B가 원고 A의 대리인 자격으로 받은 점,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인 점,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의 효력 또한 소멸하였다. 또한 설령 위 채무이행각서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원고 A에 미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0.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명산, 판사 심현근, 판사 정신영